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17가합570932 판결 [구상금 등 청구]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피고B

변론 종결2021. 2. 26.

판결 선고2021. 3.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9. 23. 접수 제69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6. 30. 신용보증기금과의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6. 30.부터 2010. 6. 29.까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 등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75,5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요율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법적절차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반복하여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6. 9. 24. 기업은행에 지급해야 할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10.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2016. 11. 29. 기업은행에 248,996,809원을 변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10. 간이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8간회단504)을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 간이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사. 이 법원은 원고가 간이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소송(신용보증기금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을 수계하지 않아 직권으로 원고를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였다.

아. 한편 원고에 대한 간이개인회생절차는 현재 폐지되거나 종결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한 간이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의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석

판사박상인

판사김태진

별지

1)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2018. 7. 1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